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1. 제출자 및 제출경과

- 가. 의안번호 : 제1146호
- 나. 제 출 자 : 서울특별시장
- 다. 제 출 일 : 2023년 8월 14일
- 라. 회 부 일 : 2023년 8월 21일

2. 제안이유

- '22.11.1 「경관법 시행령」 제5조가 개정됨에 따른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개최에 관한 조례 위임사항을 신설하고 경관사업, 경관 계획 관련 미비 사항을 보완하고 조례상 불합리하거나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가. 경관계획의 개념 정의에서 수립대상 범위를 “일정지역”에서 “관할지역”으로 변경(안 제2조제1호)
- 나. 경관사업자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동일 개념임에도 “경관사업자”, “사업자”로 각각 달리 사용 중인 용어를 “경관사업자”로 일치되게 정비(안 제2조제5호, 안 제4조)
- 다. 경관계획의 내용에 야간경관 형성 및 경관가이드라인 운용에 관한 사항 추가(안 제7조제5호 및 제9호)

- 라. 공청회 제목을 「경관법 시행령」 제5조와 일치되게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로 정정하고 공청회 개최를 위한 공고내용, 발표자 선정 등 세부사항 신설 (안 제8조)
- 마.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에 경관사업의 내용과 추진방법의 타당성, 유지관리계획의 적정성 추가(안 제11조)
- 바. 서울특별시가 현재 「경관법 시행령」 제22조에 따라 운영 중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여 「경관법 시행령」 과의 체계성을 유지하고자 함 (안 제25조)

4.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경관법」
- 나. 예산조치 : 협의완료(예산담당관 협조)
- 다. 협의사항
 - 1) 법무담당관(규제심사) : 규제없음
 - 2) 예산담당관(비용추계) :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 제출
 - 3) 감사담당관(부패영향평가) : 대상아님
 - 4) 양성평등담당관(성별영향평가) : 개선사항 없음
 - 5) 시민협력과(공공갈등진단) : 갈등사항없음
 - 6) 조직담당관(위원회 신설) : 해당없음
 - 7) 그 밖에 입법안의 시행과 관계가 있는 실·본부·국 검토의견 :
 - 의견있음(의견반영)
 - 제출부서 : 주택정책실 주택공급기획관 공공주택과
 - 제출의견 : 개정 조례안 제25조 제1항 신설 및 제2항 수정
 - 제출내용 및 검토의견

기존 조례 개정안	공공주택과 검토의견		검토의견 (도시경관담당관)
	수정안	수정사유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 3. (생략) <신설>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1. ~ 3. (현행과 같음) 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조례 제25조제②항의 경관위원회의 기능수행을 위해서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추가 반영 필요	▶ 조례제25조제②항의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기능 수행을 위해서는 법령 체계상 제25조제①항 4호에 공공주택통합심의 위원회의 추가가 필요하다는 공공주택과 검토의견 적합(의견 반영)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② (생략) 1. ~ 6. (생략) 7.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법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② (현행과 같음) 1. ~ 6. (생략) 7.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법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	▶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뿐만아니라 「공공주택특별법」 제35조에 따른 사업계획 및 제40조의8에 따른 도심 공공주택복합사업에 따른 경관심의를 필요	▶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 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이외에 공동주택건설 사업,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사업계획승인 등을 위한 건축물 경관심의를 위해 경관법 제30조제1항제7호 규정 추가가 필요하다는 공공주택과 검토의견 적합(의견반영)

라. 기타

- 1) 입법예고 (2023. 5. 18. ~ 6. 7.) 결과 : 의견없음
- 2) 신·구조문 대비표 : 붙임

5. 검토 의견

가. 개요

- 이번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인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2023.11.1.시행) 사항을 반영한 서울특별시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조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제고를 통해 조례 위임사항을 명확히 하는 한편,
- ‘경관계획의 내용’과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재정비하고 조례 체계상 맞지 않거나 불명확한 용어 등을 보완·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 하고자 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자구 수정과 경미한 사항의 개정을 포함하고 있으나, 신설 조항 및 유의미한 개정사항이 있는 조항(제2조, 제4조, 제7조, 제8조, 제11조, 제25조)을 중심으로 검토하고자 함

<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개정 내용 >

조항	개정 내용
제1조	- 자구 수정
제2조	- 용어의 정의 개정
제4조	- 경관계획수립권자·경관사업자 등의 책무 개정
제7조	- 경관계획의 내용 개정
제8조	-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조항 신설
제11조	- 경관심의 시 고려사항 개정
제12조	- 자구 수정
제14조	- 자구 수정
제18조	- 경미한 사항의 개정
제25조	-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신설
제26조	- 자구 수정
제29조	- 자구 수정
제30조	- 자구 수정

나. 검토 내용

“정의(안 제2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는 현행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인 “경관계획”과 “경관사업자”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여 정책 이해도를 높이고 사업 추진 시 혼란의 여지를 줄이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1호는 「경관법(이하 법)」 제7조제1항1)에 따라 “경관계획”의 정의를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으로 규정하고, 이를 통해 상위 법과의 체계성을 유지하며 “경관계획”에 대한 이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제5호는 법 제16조제1항 및 제2항2)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경관사업자”를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서울특별시 시장(이하 시장),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아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으로 부터 경관 사업 승인을 받은 경관사업 시행자로 정의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에 ‘지자체장’으로 되어 있던 “경관사업자”를 ‘시장’으로 명확히 정의하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경관사업계획서’의 사업 승인권자도 ‘지자체장’으로 포괄적으로 기술하지 않고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으로 하여 시장뿐만 아니라 자치구청장의 승인을 받은 경관사업 시행자도 “경관사업자”에 포함될 수 있음을 명시하였음

1) 「경관법」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2) 「경관법」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외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 생략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현 행	개 정 안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p> <p>6.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경관계획”이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p> <p>2. ~ 4. (현행과 같음)</p> <p>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다.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위원회(“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받아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경관 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경관사업 시행자”라 한다)</p> <p>6. (현행과 같음)</p>

“경관계획수립권자·경관사업자 등의 책무(안 제4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는 경관계획수립권자와 경관사업자 등의 책무를 규정한 것으로, 경관계획수립권자인 시장과 이번 일부조례개정안 제2조제5호에서 정의한 경관사업자의 책무와 시민의 협력 의무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조례의 입법 목적을 보다 효과적으로 달성하고자 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 제4조³⁾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조

3) 「경관법」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경관계획의 내용(안 제7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제5호는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을 ‘야간경관 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지난 ’23.6월 발표한 서울시의 ‘디자인서울 2.0’ 정책 방향⁶⁾에 따라 야간경관 형성을 중점 추진하기 위해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 주요 선진국은 물론 국내에서도 지역경쟁력 강화 및 도시브랜드 이미지 제고를 위해 야간경관 형성을 통한 야간경관 자원화를 도모하고 있으며, 일부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계획의 내용으로 야간경관의 형성을 조례에 명시⁷⁾하고 있음을 고려할 때 관련 사항의 개정 취지는 마땅해 보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9호는 경관계획의 주요 요소 중 하나로 현행 조례 제2조제6호에서 정의한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구체적인 경관관리방안을 경관계획의 내용에 포함함으로써 경관계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 11호의 규정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1. ~ 4. (생략)</p> <p>5. 야간경관 관리에 관한 사항</p> <p>6. ~ 8. (생략)</p> <p>9. <u>그 밖에</u>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p> <p>-----</p> <p>-----</p> <p>-----.</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관리 및 형성---</p> <p>6. ~ 8. (현행과 같음)</p> <p>9. <u>경관가이드라인 운용 등 그 밖에</u>-----</p> <p>-----</p> <p>----</p>

6) ‘디자인서울 2.0’ (2040 경관계획 수립) 7대 경관자원별(△자연녹지경관, △수변경관, △역사문화경관, △시가지경관, △야간경관, △진입경관, △옥외광고물) 보전·관리 및 형성 방향을 제시하여 향후 서울시 경관심의 운영 및 경관상세계획 등 수립 지침으로 활용

7) 「광주광역시 경관 조례」 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법 제9조제1항 제11호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 (생략)

4. 야간경관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안 제8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는 「경관법 시행령(이하 영)」 제5조 개정(2023.11.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조 제목을 “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에서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로 변경하고, 법 제11조와 영 제5조에 따라 공청회 개최를 위한 세부사항을 신설하여 상위법령과의 정합성을 유지하는 한편, 공청회를 통한 의견청취 내용을 반영하도록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요건을 강화하고자 함
- 이는 행정행위(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 전에 공청회를 통해 시민이 행정행위 과정에 참여하도록 함으로써 행정행위의 적법성·타당성을 확보하도록 한 것으로, 행정행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1항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사전 공청회 개최를 통해 시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듣고 타당한 내용은 경관계획에 반영하도록 강행규정(~하여야 한다)으로 명시함으로써 시장의 공청회 개최 의무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2항은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영 제5조와 「행정절차법」 제38조(붙임3 참조)에 따라 개최목적, 일시 및 장소, 주요 내용 등의 사항을 포함하는 공청회 내용을 일간신문, 시 누리집, 방송 등에 공고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4항 및 제5항은 각각 공청회 발표자의 선정 방법과 선정 시 공정성 확보 의무를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 제38조의3(붙임3 참조)에 따라 공청회의 공정성 제고를 위해 필요한 사항이라 생각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제9항은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의 공청회 개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를 것을 명시함으로써, 공청회의 절차적 정당성 및 법적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으로 판단됨

현 행	개 정 안
<p>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u><신 설></u></p> <p><u><신 설></u></p> <p>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u><신 설></u></p>	<p>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이 영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 시 누리집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p> <p>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의견제출 방법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p> <p>③ ----- 공청회-----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p>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신 설></p>	<p>람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 ----- 개최 이후 ----- -----.</p> <p>⑦·⑧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 개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p>

「경관법」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경관법 시행령」
제5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조례로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을 정할 때 적용되는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음 각 목의 사항을 일반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일간신문을 말한다),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방송 등의 매체를 통해 공고할 것
 가. 공청회 개최목적
 나.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다.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라.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2. 제1호에 따른 공고는 공청회 개최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1회 이상 실시할 것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안 제11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는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에 관한 것으로, 현행 조례는 연차별 집행계획 외에 자원 조달방안과 예산확보방안 등 예산 측면을 중심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일부조례개정안은 경관사업의 내용, 추진방법의 타당성과 유지관리 계획을 고려사항에 규정함으로써 실제 사업 추진 실행력과 경관 형성 이후 유지관리 측면까지 점검하고자 함에 따라 경관사업 심의의 실효성 제고 측면에서 타당하다 생각됨
- 한편, 현행 조례는 제11조제2호 및 제3호에서 ‘적절성’이라 표현하고 있으나, 조례의 맥락 상 제도의 알맞은 특성을 지칭하는 ‘적정성’이 더 적합한 용어라고 판단되므로 이번 일부조례개정안에서 ‘적절성’을 ‘적정성’으로 자구 수정하고자 하는 것은 마땅해 보임

현 행	개 정 안
<p>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p> <p>2. 사업비 계산근거 및 자원 조달방안의 <u>적절성</u></p> <p>3. <u>유지관리</u>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u>적절성</u></p>	<p>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 ----- ----- -----.</p> <p>1. <u>사업의 내용과 추진방법 및 연차별</u> -----</p> <p>2. ----- <u>적정성</u></p> <p>3. <u>유지관리 계획, 유지관리</u> ----- <u>적정성</u></p>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안 제25조)”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는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관한 것으로, 법 제26조부터 제28조까지는 일정 규모 이상의 사회기반시설과 개발사업, 건축물의 건축 시 경관 심의를 위해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하고 있으며,
- 법 제29조는 시장은 경관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고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와 공동으로 심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영 제22조제2호는 시장이 지정하는 위원회와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음

< 「경관법」 및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에 따른 경관 심의 대상 >

구 분	심의대상	세부 심의대상
사회기반 시설 ⁸⁾	도로사업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도시철도	총 사업비 100억원 이상
	하천시설	총 사업비 50억원 이상
	전원설비, 생활체육시설, 자전거이용시설	총공사비 5억원 이상
	야간경관시설	좋은빛위원회 심의대상 시설
개발사업 ⁹⁾	도시개발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	사업구역 면적 3만㎡ 이상
건축물 ¹⁰⁾	경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3층·12m, 건폐율 30% 초과
	중점경관관리구역 내 건축물	역사도심 : 5층 이상, 한강변 : 7층 이상, 주요산 : 6층 이상
	공공건축물	건축허가(협의) 대상 건축물
	기타 건축물	5천㎡이상 다중이용건축물, 16층이상건축물

8) 「경관법」 제30조제1항제5호,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
2.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25조제1항제4호에 영 제22호제2호 사목의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로서 ‘공공주택통합심의 위원회’를 추가하고, 안 제25조제2항제7호에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포함하도록 하고자 하는 것임
- 영 별표 제1호(도시의 개발)나목에서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제3호가목에 따른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을 경관심의 대상 개발사업으로 지정하고 있으므로, 「공공주택 특별법」의 위임조례인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를 공공주택사업과 관련하여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추가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하다 판단됨
- 또한,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에서는 안 제25조제2항제8호에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영 제22조제2호마목에 따른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추가하고자 하는 것으로, 해당 위원회는 영 별표 제2호(산업단지의 조성)가목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9) 「경관법」 제30조제1항제6호,

「경관법 시행령」 제19조(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대상 등) ① 법 제27조제1항에서 “도시개발사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개발사업”이란 별표의 사업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발사업을 말한다.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호에 따른 도시지역(이하 이 항에서 “도시지역”이라 한다)에서 시행하는 개발사업 대상지역 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상인 개발사업

10) 「경관법」 제30조제1항제7호,

「서울특별시 경관 조례」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④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시가지·특화경관지구를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호에 따른 산업단지개발사업의 경관심의를 담당하도록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생각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제2항제1호나목은 ‘「주택법」 제16조’를 ‘「주택법」 제15조’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주택법」 개정 사항을 반영한 조문 정비에 해당하므로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한다는 측면에서 적절하다 하겠음
- 다만, 영 제22조제2호와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서는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규정하여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는 것이 필요하다 할 것임. 현행 조례와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하는 위원회로 ‘옥외광고물심의위원회’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데, 이는 이미 해당 위원회가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1호11)에 따라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고 있어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자체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판단되기 때문인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음

현 행	개 정 안
<p>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p> <p>1. ~ 3. (생략)</p>	<p>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 ----- ----- -----.</p> <p>1. ~ 3. (현행과 같음)</p>

11)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 ④ 광고물등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시·도(특별자치시 및 특별자치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시·군·자치구에 각각 옥외광고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광고물등과 도시경관과의 조화에 관한 사항
2. 광고물등의 디자인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광고물의 표시 또는 설치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거나 시·도 또는 시·군·자치구 조례로 정하는 사항

현 행	개 정 안
<p><신 설></p> <p>② 영 제22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도시·건축공동위원회</p> <p>가. (생 략)</p> <p>나.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p> <p>2. ~ 6. (생 략)</p> <p><신 설></p> <p><신 설></p> <p>③·④ (생 략)</p>	<p>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p> <p>② ----- ----- ----- -----.</p> <p>1. 도시·건축공동위원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주택법」제15조----- -----</p> <p>2. ~ 6 (현행과 같음)</p> <p>7.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p> <p>8.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p> <p>③·④ (현행과 같음)</p>

「공공주택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3. "공공주택사업"이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을 말한다.

가. 공공주택지구조성사업: 공공주택지구를 조성하는 사업

나. 공공주택건설사업: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사업

다. 공공주택매입사업: 공공주택을 공급할 목적으로 주택을 매입하거나 인수하는 사업

라. 공공주택관리사업: 공공주택을 운영·관리하는 사업

마.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심 내 역세권, 준공업지역, 저층주거지에서 공공주택과 업무시설, 판매시설, 산업시설 등을 복합하여 건설하는 사업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33조제2항 및 법 시행령 제26조제2항에 따라 도시계획·건축·환경·교통·재해 등 지구계획 승인 또는 사업계획 승인과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 및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이하 "시통합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건축법」에 따른 건축물 관련 사항
- 1의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관리계획 관련 사항
2.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광역교통개선대책
3. 「도시교통정비 촉진법」에 따른 교통영향평가서
4. 「산지관리법」에 따라 해당 주택지구내 속한 산지의 이용계획
5. 「에너지이용 합리화법」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른 사전재해영향성검토
7.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교육환경에 대한 평가
8.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철도건설사업
9.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시통합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생략)

9. "산업단지개발사업"이란 산업단지를 조성하기 위하여 시행하는 다음 각 목의 사업을 말한다.

가. 제7호의2에 따른 시설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나. 첨단과학기술산업의 발전을 위한 교육·연구시설용지 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다. 산업단지의 효율 증진을 위한 업무시설·정보처리시설·지원시설·전시시설·유통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

라. 산업단지의 기능 향상을 위한 주거시설·문화시설·의료복지시설·체육시설·교육시설·관광휴양시설 등의 용지조성사업 및 건축사업과 공원조성사업

마. 공업용수와 생활용수의 공급시설사업

바. 도로·철도·항만·궤도·운하·유수지(溜水池) 및 저수지 건설사업

사. 전기·통신·가스·유류·증기 및 원료 등의 수급시설사업

아. 하수도·폐기물처리시설, 그 밖의 환경오염방지시설 사업

자. 그 밖에 가목부터 아목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경관법」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경관법 시행령」

- 제22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 (생략)
2. 다음 각 목의 위원회로서 해당 시·도지사등(행정시장 및 경제자유구역청장의 경우에는 시·도지사를 말한다)이 지정하는 위원회
 - 가. 「건축법」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건축위원회
 - 나.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3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
 - 다.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15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농업·농촌및식품산업정책심의회
 - 라.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도시공원위원회
 - 마.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별법」 제6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지방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바.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두는 옥외광고심의위원회
 - 사. 그 밖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

다. 종합 의견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2023.11.1.시행) 사항을 반영하면서 그간 상위법령과 체계가 맞지 않았던 조문을 일부 조정하고, 불명확한 용어를 보완·정비하여 조례가 본래 목적과 취지에 맞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하였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에서는 “경관계획”과 “경관사업자”에 대한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고, 현행 조례에서 ‘지자체장’으로 지칭되어 있는 “경관사업자”를 ‘서울특별시장’으로 명확히 하며, 경관사업 승인권자를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으로 명시하고자 하였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4조에서는 법과의 정합성을 맞추기 위해 현행 조례 조 제목 중 “시민의 책무”를 삭제하고 “경관계획 수립권자·경관사업자 등의 책무”로 수정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7조에서는 ‘디자인서울 2.0’의 정책 방향에 따라 야간경관 형성을 중점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경관계획의 내용”을 정

비하고, 경관계획에 ‘경관가이드라인의 운용’에 관한 사항을 추가하고자 하는 것임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8조에서는 「경관법 시행령」의 개정 (2023.11.1.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행정행위(경관계획 수립 또는 변경) 시 공청회를 통해 시민이 행정행위 과정에 참여하도록 명시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행정행위의 공정성·신뢰성 제고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라 판단됨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11조에서는 “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에 경관사업의 내용, 추진방법의 타당성과 유지관리 계획을 추가하여 실제 사업 추진 실행력과 경관 형성 이후 유지관리 측면까지 점검하고자 하였음
- 이번 일부개정조례안 제25조에서는 영 제22조제2호에 따라 필요시 시장이 지정할 수 있는 경관 심의를 담당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에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와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를 추가하여 상위 법령과의 체계성을 유지하고자 하였음
- 종합하면, 이번 일부개정조례안은 법규에서의 ‘체계정당성의 원리’에 따라 상위법령과 위임 조례의 정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이는 조례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조치라 할 수 있음. ‘체계정당성의 원리’는 입법과정에서 지켜져야 할 원리이므로, 향후 조례 제·개정 시에는 상위법령과의 정합성과 체계성 및 관련 법령과의 조화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현 행	개 정 안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관법」과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1조(목적) ----- ----- ---- <u>필요한</u> ----- -----.</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p> <p>1. "경관계획"이란 일정 지역의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p> <p>2. ~ 4. (생략)</p> <p>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자체장, 사업계획서의 심의를 거쳐 해당 지자체장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p> <p>6. (생략)</p>	<p>제2조(정의) ----- -----.</p> <p>1. "경관계획"이란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관할구역을 대상으로 수립하는 계획을 말한다.</p> <p>2. ~ 4. (현행과 같음)</p> <p>5. "경관사업자"란 경관사업을 시행하는 자로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중앙행정기관의 장 나.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 다. 법 제16조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경관사업계획서에 대한 경관위원회("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를 포함한다)의 심의를 받아 시장 또는 자치구청장으로부터 경관 사업의 승인을 받은 자(이하 "경관사업 시행자"라 한다)</p> <p>6. (현행과 같음)</p>
<p>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사업자·시민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시의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조성을 위하여 시민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종합적인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하며,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시민의 이해를 높여야 한다.</p> <p>② 사업자는 주변의 경관을 충분히 고려하고, 개발행위를 통하여 지역의 경관형성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4조(경관계획수립권자·경관사업자 등의 책무) ① 시장----- ----- ----- ----- ----- ----- <u>높이도록 노력하여야</u> -----.</p> <p>② <u>경관사업자</u>----- ----- -----.</p>

현 행	개 정 안
<p>다.</p> <p>③ (생 략)</p> <p>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법 제9조제1항제 11호의 규정에 따른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다.</p> <p>1. ~ 4. (생 략)</p> <p>5. 야간경관 <u>관리</u>에 관한 사항</p> <p>6. ~ 8. (생 략)</p> <p>9. <u>그 밖에</u>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p>제8조(경관계획의 수립을 위한 공청회) <u><신 설></u></p> <p><u><신 설></u></p>	<p>③ (현행과 같음)</p> <p>제7조(경관계획의 내용) ----- ----- ----- -----.</p> <p>1. ~ 4. (현행과 같음)</p> <p>5. ----- <u>관리 및 형성</u>---</p> <p>6. ~ 8. (현행과 같음)</p> <p>9. <u>경관가이드라인 운용 등 그 밖에</u>----- ----- ----</p> <p>제8조(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을 위한 공청회) ① 시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p> <p>② 시장이 영 제5조에 따라 공청회를 개최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일간신문(「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라 전국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를 주된 보급지역으로 등록한 일반 일간신문을 말한다), 시 누리집 또는 방송 등에 공청회 개최예정일 14일 전까지 1회 이상 공고해야 한다.</p> <p>1. 공청회 개최목적 2. 공청회 개최예정 일시 및 장소 3.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관계획의 개요 및 주요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의견제출 방법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p>

현행	개정안
<p>① 시장은 영 제5조제2항에 따른 공청회의 주재자를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지명 또는 위촉할 수 있다.</p> <p>1. ~ 3. (생략)</p> <p><신설></p> <p><신설></p> <p>② 경관계획안의 내용에 의견이 있는 자는 공청회에 참석하여 직접 의견을 진술하거나 공청회 개최이후 7일 이내에 시장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의견의 요지를 제출할 수 있다.</p> <p>③·④ (생략)</p> <p><신설></p>	<p>③ ----- 공청회----- ----- -----.</p> <p>1. ~ 3. (현행과 같음)</p> <p>④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시장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p> <p>⑤ 시장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p> <p>⑥ ----- ----- ----- 개최 이후 ----- ----- -----.</p> <p>⑦·⑧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p> <p>⑨ 제1항부터 제8항까지에서 정한 사항 외에 공청회 개최의 절차와 방법 등에 관하여는 「행정절차법」을 따른다.</p>
<p>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영 제8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경관사업의 심의시 고려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연차별 집행계획의 타당성</p> <p>2. 사업비 계산근거 및 자원 조달방안의 적절성</p> <p>3. 유지관리 비용 및 예산확보방안의 적절성</p>	<p>제11조(경관사업 심의시 고려사항) ----- ----- ----- -----.</p> <p>1. 사업의 내용과 추진방법 및 연차별 ----- -----</p> <p>2. ----- 적절성</p> <p>3. 유지관리 계획, 유지관리 ----- 적절성</p>
<p>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영 제9조제1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p>	<p>제12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조직) ① -- ----- ----- 사람</p>

현 행	개 정 안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u>지방의회</u> 의원	6. <u>서울특별시의회</u>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영 제 9조제3항에 따른 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은 다음과 같다.	제13조(경관사업추진협의체의 기능)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u>경관사업</u> 마친 후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한 자문과 결정	2. <u>경관사업</u> 을 ----- -----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생 략)	제14조(경관사업에 대한 재정지원) ① (현 행과 같음)
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관사업 등에 대하여 기술적 지원이나 드는 <u>비용</u> 을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② ----- ----- ----- <u>비용</u> 의 ----- -----.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③ · ④ (생 략)	③ · ④ (현행과 같음)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생 략)	제18조(경관협정운영회의 설립신고)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20조제2항 및 영 제12조제1항에 따른 경관협정운영회의 <u>설립신고</u> 는 별지 제3호 서식과 같다.	② ----- ----- <u>설립(변경)신고서</u> 는 별지 제3호 서식으로 한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시장은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경관협정에 필요한 다음 각 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하거나 융자할 수 있다.	제21조(경관협정에 관한 재정지원) ① -----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시장이 인정하는 경관협정의 이행에 드는 사업비	5. ----- ----- <u>필요한</u> -----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영 제2	제25조(경관과 관련된 위원회) ① -----

현행	개정안
<p>2조제2호사목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위원회"란 다음 각 호의 위원회를 말한다.</p> <p>1. ~ 3. (생략)</p> <p><신설></p> <p>② 영 제22조제2호 및 제25조제1항에 따른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법 제30조에 따른 경관위원회의 기능을 수행한다.</p> <p>1. 도시·건축공동위원회</p> <p>가. (생략)</p> <p>나.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중 「주택법」 제16조에 따른 주택건설사업 및 대지조성사업</p> <p>2. ~ 6. (생략)</p> <p><신설></p> <p><신설></p> <p>③·④ (생략)</p> <p>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영 제23조제6항에 따른 공동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2. (생략)</p> <p>3. 공동위원회에는 간사를 둘 수 있다. 이때 간사는 공동위원회를 주관하는</p>	<p>----- ----- -----.</p> <p>1. ~ 3. (현행과 같음)</p> <p>4.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따른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p> <p>② ----- ----- -----.</p> <p>1. 도시·건축공동위원회</p> <p>가. (현행과 같음)</p> <p>나. ----- -----「주택법」제15조----- -----</p> <p>2. ~ 6 (현행과 같음)</p> <p>7. 공공주택통합심의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사항 중 「공공주택특별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주택사업</p> <p>8. 산업단지계획심의위원회 : 법 제30조제1항제6호에 따른 개발사업 중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조제9호에 따른 산업단지 개발사업</p> <p>③·④ (현행과 같음)</p> <p>제26조(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 ----- ----- -----.</p> <p>1.·2. (현행과 같음)</p> <p>3. ----- -----</p>

현 행	개 정 안
<p>부서의 부서장이 된다.</p> <p>4. 5. (생략)</p> <p>② ③ (생략)</p> <p>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2. 삭제</p> <p>3. 해당 지자체장이 경관형성을 위해 추진하는 사업 중 자문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청하는 사항</p> <p>4. (생략)</p> <p>5. 그 밖에 시장이 <u>경관형성 및 보전·관리 및 형성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u></p> <p>제30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영 제26조제9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p> <p>1. 시장은 위원이 사임의사가 있을 때, 정당한 사유 없이 심의·자문에 응하지 아니한 때,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임기가 끝나기 전이라도 <u>위원의 위촉을 해제</u> 할 수 있다.</p> <p>2. (생략)</p> <p>3. 경관위원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경관위원회가 지정하는 사항에 대한 소위원회의 심의·의결은 경관위원회의 심의·의결로 본다. 이 경우 간사는 소위원회에서 <u>심의·의결</u> 사항을 차기 경관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p>	<p>----- 말한다.</p> <p>4. 5. (현행과 같음)</p> <p>② ③ (현행과 같음)</p> <p>제29조(경관위원회의 자문대상) ----- ----- -----.</p> <p>3. <u>시장</u>----- -----</p> <p>4. (현행과 같음)</p> <p>5. ----- <u>경관의</u> ----- -----</p> <p>제30조(경관위원회의 운영 등) ----- ----- -----.</p> <p>1. ----- ----- ----- ----- <u>위원을 해촉할</u> ----- -----.</p> <p>2. (현행과 같음)</p> <p>3. ----- ----- ----- ----- <u>심의·의결한</u> ----- -----.</p>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의 책무)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형성하는 데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우수한 경관을 발굴하여 지원·육성하여야 한다.

②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경관관리의 기본원칙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아름답고 쾌적한 경관을 보전하고 개선하기 위하여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하여야 한다.

(생략)

제7조(경관계획의 수립권자 및 대상 지역) ① 다음 각 호의 자는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기 위한 계획(이하 “경관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시·도지사

2.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시〔「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행정시(이하 “행정시”라 한다)는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시장

3. 인구 10만명을 초과하는 군(광역시 관할구역에 있는 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 제2항 및 제4항에서 같다)의 군수

② 인구 10만명 이하인 시·군의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관할구역에 대하여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③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은 둘 이상의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행정시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공동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시장·군수가 요청하거나 그 밖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둘 이상의 시 또는 군의 관할구역에 걸쳐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경관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생략)

제9조(경관계획의 내용) ① 경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만, 도지사가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4호부터 제11호까지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고,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 행정시장, 구청장등 또는 경제자유구역청장이 수립하는 경관계획에는 제5호부터 제9호까지 및 제11호의 사항을 생략할 수 있다.

1. 경관계획의 기본방향 및 목표에 관한 사항
2. 경관자원의 조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경관구조의 설정에 관한 사항
4. 중점적으로 경관을 보전·관리 및 형성하여야 할 구역(이하 “중점경관관리구역”이라 한다)의 관리에 관한 사항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7조제1항제1호에 따른 경관지구(이하 “경관지구”라 한다)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항
6.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의 추진에 관한 사항
7. 제19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8. 경관관리의 행정체계 및 실천방안에 관한 사항
9. 자연 경관, 시가지 경관 및 농산어촌 경관 등 특정한 경관 유형 또는 건축물, 가로(街路), 공원 및 녹지 등 특정한 경관 요소의 관리에 관한 사항
10. 경관계획의 시행을 위한 재원조달 및 단계적 추진에 관한 사항
11.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

(생략)

제11조(공청회 및 지방의회의 의견청취) ① 시·도지사등은 경관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공청회를 개최하여 주민 및 관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공청회에서 제시된 의견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경관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생략)

제16조(경관사업의 대상 등)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은 지역의 경관을 향상시키고 경관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이하 “경관사업”이라 한다)을 시행할 수 있다.

1. 가로환경의 정비 및 개선을 위한 사업
 2. 지역의 녹화(綠化)와 관련된 사업
 3. 야간경관의 형성 및 정비를 위한 사업
 4. 지역의 역사적·문화적 특성을 지닌 경관을 살리는 사업
 5. 농산어촌의 자연경관 및 생활환경을 개선하는 사업
 6. 그 밖에 경관의 보전·관리 및 형성을 위한 사업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업
- ② 제1항에 따라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자 외의 자는 경관계획이 수립된 지역에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그 경관계획을 수립한 시·도지사등의 승인을 받아 경관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이 경우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시·도지사등에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제2항에 따른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29조제1항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 또는 승인신청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과 관련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고, 시·도지사등이 경관사업의 승인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경관사업의 시행을 승인하기 전에 제29조제1항에 따라 해당 시·도지사등 소속으로 설치하는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생략)

제23조(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심의 대상 및 규모) 법 제26조제1항제5호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도로법」에 따른 도로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
2. 「도시철도법」에 따른 도시철도시설로 총 사업비가 100억 원 이상인 사업
3. 「하천법」에 따른 하천시설로 총 사업비가 50억 원 이상인 사업
4.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시설 중 [별표]에 해당하는 사업

제24조(건축물의 경관심의 대상) ① 법 제28조에 따라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는 건축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관지구(시가지·특화경관지구를 제외한다)의 건축물로서 높이 3층 또는 12미터 초

과, 건폐율 30퍼센트를 초과하여 건축하는 건축물

2.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건축물로서 법 제9조제1항제4호에 따라 경관계획에서 중점경관관리구역의 관리를 위하여 경관심의 대상으로 정하는 건축물
3.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또는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이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허가(협의)대상 건축물
4. 제1호에서 제3호까지의 건축물에 해당하지 않는 건축물로서 「건축법 시행령」 제2조제17호 가목 및 나목에 해당하는 건축물

② 영 제22조제2호가목에 따른 건축위원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운영한다.

1. 제1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건축물은 「서울특별시 건축조례」 제7조(기능 및 절차 등)를 준용하여 시 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2. 제1항 제3호의 건축물은 5층 이상 또는 연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하고, 그 미만인 경우에는 구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3. 제2호에도 불구하고 시장(산하기관장을 포함한다)이 시행하는 사업인 경우에는 시 건축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생략)

제30조(경관위원회의 기능) ① 경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제12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수립 또는 변경
2. 제13조에 따른 경관계획의 승인
3. 제16조에 따른 경관사업 시행의 승인
4. 제21조에 따른 경관협정의 인가
5. 제26조에 따른 사회기반시설 사업의 경관 심의
6. 제27조에 따른 개발사업의 경관 심의
7. 제28조에 따른 건축물의 경관 심의
8. 그 밖에 경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38조(공청회 개최의 알림) 행정청은 공청회를 개최하려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14일 전까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당사자들에게 통지하고 관보, 공보, 인터넷 홈페이지 또는 일간신문 등에 공고하는 등의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한다. 다만, 공청회 개최를 알린 후 예정대로 개최하지 못하여 새로 일시 및 장소 등을 정한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7일 전까지 알려야 한다.

1. 제목
2. 일시 및 장소
3. 주요 내용
4. 발표자에 관한 사항
5. 발표신청 방법 및 신청기한
6. 정보통신망을 통한 의견제출
7. 그 밖에 공청회 개최에 필요한 사항

제38조의2(온라인공청회) ① 행정청은 제38조에 따른 공청회와 병행하여서만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공청회(이하 “온라인공청회”라 한다)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수 있다.

1.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 등 국민의 안전 또는 권익보호 등의 이유로 제38조에 따른 공청회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
2. 제38조에 따른 공청회가 행정청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개최되지 못하거나 개최는 되었으나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하고 무산된 횟수가 3회 이상인 경우
3. 행정청이 널리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온라인공청회를 단독으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만, 제22조제2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행정청은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 의견제출 및 토론 참여가 가능하도록 적절한 전자적 처리능력을 갖춘 정보통신망을 구축·운영하여야 한다.

④ 온라인공청회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누구든지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의견을 제출하거나 제출된 의견 등에 대한 토론에 참여할 수 있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온라인공청회의 실시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8조의3(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의 선정) ① 행정청은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거나 그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을 가진 사람 중에서 공청회의 주재자를 선정한다.

② 공청회의 발표자는 발표를 신청한 사람 중에서 행정청이 선정한다. 다만, 발표를 신청한 사람이 없거나 공청회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지명하거나 위촉할 수 있다.

1.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당사자등
2.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이 있는 사람
3. 해당 공청회의 사안과 관련된 분야에 종사한 경험이 있는 사람

③ 행정청은 공청회의 주재자 및 발표자를 지명 또는 위촉하거나 선정할 때 공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공청회의 주재자, 발표자, 그 밖에 자료를 제출한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와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9조(공청회의 진행) ① 공청회의 주재자는 공청회를 공정하게 진행하여야 하며, 공청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발표 내용을 제한할 수 있고, 질서유지를 위하여 발언 중지 및 퇴장 명령 등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발표자는 공청회의 내용과 직접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만 발표하여야 한다.

③ 공청회의 주재자는 발표자의 발표가 끝난 후에는 발표자 상호간에 질의 및 답변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방청인에게도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39조의2(공청회 및 온라인공청회 결과의 반영) 행정청은 처분을 할 때에 공청회, 온라인공청회 및 정보통신망 등을 통하여 제시된 사실 및 의견이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

제39조의3(공청회의 재개최) 행정청은 공청회를 마친 후 처분을 할 때까지 새로운 사정이 발견되어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청회를 다시 개최할 수 있다.

1. 비용발생 요인

-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에 해당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제3조(비용추계서의 제출 범위) ① 의원·위원회·시장·교육감이 비용을 수반하는 의안을 발의·제안 또는 제출하는 경우에는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의안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0억원 미만인 경우
2.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

3. 미첨부 사유

- 예상되는 비용이 없음

4. 작성자

서울특별시 도시경관담당관 박세창 (02-2133-1926)